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47
----------	-------

발의연월일 : 2025. 10. 28.

발 의 자 : 전진숙 · 남인순 · 이주희
채현일 · 박지원 · 박해철
김 윤 · 이수진 · 윤건영
김한규 · 안도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음(제766조제1항·제2항). 그러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의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가해자와의 의존·위계관계, 가족 내부의 은폐와 2차 피해 우려, 트라우마로 인한 인지·진술 지연 등으로 제때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효 완성으로 실체적 정의가 좌절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피해자 보호 원칙(UN 아동권리협약 등)에 비추어 볼 때,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성적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청구권의 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권리구제를 실효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법」에 “친족에 의해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또는 그 밖

의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6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66조제4항 신설). 아울러 부칙으로,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성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시행 당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도 같은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여, 진행 중인 사건의 구제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부칙 제2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함(부칙 제1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친족에 의해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또는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이로 인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7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766條(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 時效) ① ~ ③ (생 략) <u><신 설></u>	第766條(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 時效)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u> <u>불구하고, 친족에 의해 성폭력,</u> <u>성추행, 성희롱 또는 그 밖의</u> <u>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u> <u>이로 인하여 가지는 손해배상</u> <u>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u> <u>하지 아니한다.</u>